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지침

제정 2022. 2. 7.
개정 2022. 6. 1.

본 지침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결정, 결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이 지침에서 “훈령”이란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을 말한다.
- 이 지침에서 “발생부서”란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8조제1호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경정의 사안이 발생한 부서를 말한다.
- 이 지침에서 ‘미발급액’이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상 추가로 납부한 또는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 심의 대상

- 납세자가 관세조사 등의 결과통지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사안
 - ①이미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을 받은 건,
②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건은 심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 심의 관할

- 세관의 발생부서가 속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다만, ①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액이 5억 원 이상인 사안 또는 ②관세행정 및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보호관이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을 결정한 사안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처리 기한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초일, 토요일 및 공휴일 불포함)에 처리(심의결정 통지)한다.

□ 심의 절차

① (심의요청서 등 접수 및 접수 통보)

- 납세자가 관세조사 등의 결과통지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사안
 - 세관의 발생부서가 속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붙임 1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청서(대리인이 있는 경우 붙임 2의 위임장 포함)를 접수한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접수 즉시 발생부서에 접수한 심의요청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인계)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액이 5억 원 이상인 심의 요청 사안인 경우 즉시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관세행정 및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사안인 경우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을 요청한다.

③ (의견서 작성·제출) 발생부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초일, 토요일 및 공휴일 불포함)에 붙임 3의 발생부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견조회 및 자료요청)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필요 시 발생부서의 장 또는 본청 국·실 등에 **의견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 의견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발생부서의 장 또는 본청 국·실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견진술 안내 및 심의절차)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와 발생부서의 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 및 발생부서장의 의견 등을 기술한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 그 밖에 의견진술 안내 및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은 **훈령 제69조, 제70조**를 준용한다.

□ 결정 및 통지

○ (결정 유형) 심의요청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발급 결정**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각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미발급 결정**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각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일부 발급 결정** : 심의대상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각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결정 통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을 발생 부서의 장 및 납세자에게 통지한다.

- (기타) 기타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은 훈령 제71조를 준용한다.

□ 결정의 효력

-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의결)의 효력은 훈령 제39조제4항*을 준용한다.

- *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의결을 존중하여야 한다.”

□ 시행일

- 이 지침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관세조사 등의 결과를 통지한 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청서

| | | | | | | |
|---------------------------|-------------------------|--|------------------|---------------------|---------------------------------------|------------------|
| 납 세 자 | 상 호 (법 인 명) | <i>㈜○○○코리아</i> | 사업자등록번호 | <i>123-45-78910</i> | | |
| | 성 명 (대 표 자) | <i>홍길동</i> | 생 년 월 일 | <i>1950. 1. 1.</i> | | |
| | 주 소 (사 업 장) | <i>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i> | | 전화번호 | <i>02-123-4567</i> | |
| | 전자우편 주소 | <i>gildong.hong@○○○korea.co.kr</i> | | 휴대번호 | <i>010-1234-5678 (담당: 김길동 대리)</i> |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 금액 | | <i>759,000,000원 (*수입신고건별 세부내역 별지 참조)</i> | | | | |
| 심의요청 원인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세조사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조사 <input type="checkbox"/> 건별심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추가발생 세액 납부 여부 | | <input type="checkbox"/> 납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납부 | | 발 생 부 서 | 세관 | <i>서울세관</i> |
| 발급신청 거부처분 여부 |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 | | 과 | <i>심사2국 1심사관</i> |
| 심의 요청내용 | | <i>서울세관장(심사2국 1심사관)의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울세관 심사1관-10.2022.1.1.)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합니다. 사실관계 및 발급요청에 대한 사유는 별지와 같습니다.</i> | | | | |
| | |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할 수 있음 | | | | |

위와 같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첨부서류 : *사실관계 및 발급요청에 대한 사유서*

2022 년 1 월 15 일

신 청 인 : *홍길동* (인)

(작성자) *통관팀 김길동 대리*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의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수집·이용 목적 (민원처리와 사후관리 등 이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처리)
- 수집 대상 개인정보 (본 서식 및 구비서류의 각 항목별 개인정보)
- 보유·이용 기간 (5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또한, 동법 제24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의 수집·이용에 동의 여부를 선택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서울 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귀하

위 임 장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사업장소재지(주소) :
- 자 격 :
- 이메일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관 계 :

상기 대리인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청 관련 사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사업장소재지(주소) :

법인명(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 발생부서 의견서 | |
|------------------------------------|--|
| 안전번호 | |
| 사실관계 | <p>- 당해 물품 거래와 관련된 국내의 거래도(도식화 및 설명)</p> <p>- 당해 업체와 관련된 국내의 당사자들 및 당해 업체의 투자 구조 등 지배구조</p> <p>- 심사(조사)결과보고서 내용 중 과세누락과 관련된 사실관계 요약 등 (별지 사용 가능)</p> |
| 과세 등 처분논리 (적용법조 포함) | <p>상기 사실관계에 대한 처분의 법적논리 (별지 사용 가능)</p>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의견 | |
| 발급 여부 의견 | <p>발급 불가 사유 (별지 사용 가능)</p> |
| <p>첨부 : 심사(조사) 결과보고서 및 기타 참조자료</p> | |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수입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이나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 제38조의2제1항·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③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④ 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자가 세액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5.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6.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 또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등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지 못하여 일부 수입신고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자가 그 밖의 수입신고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정하게 신고한 것이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
7. 수입자가 거래가격에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호에서 "가산요소"라 한다)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가산요소를 거래가격에 포함하려면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8. 수입자가 「관세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같은 법 제31조 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로서 수입자가 해당 사유를 인식하는 데에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⑤ 생 략

⑥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 ⑨ 생 략